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4.

발의자 : 박광온 · 신경민 · 권칠승
최도자 · 이찬열 · 김해영
김영주 · 문미옥 · 백혜련
전혜숙 · 김정우 · 김현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.

그러나 예산안 심사의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세출 예산 사업별설명서를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, 결산 보고서의 부속서류에는 이와 대응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 제1호의2 신설).
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첨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(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	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</u>
2. ~ 12. (생 략)	2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